

# 발전협의회 운영 지침

제정 2004. 5. 19

개정 2008. 10. 21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전협의회"라 함은 기정원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정원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기정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원장 또는 인사담당부서장 등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지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 (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3~5인의 동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가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방식을 채택하여 선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08.10.21)

1. 근로자 전체회의에서 찬반 공개 거수투표에 의한 선출
2. 근로자 전체회의에서 지명 추대합의에 의한 방식
3. 근로자 전체회의에서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최다 추천자 순에 의한 선출
4. 선거인단 구성을 통한 간접선출
5. 기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된 방식에 의한 선출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2008.10.21)

- 가. 원장
- 나. 인사담당 부서장
- 다. 위원급 이상 직원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

**제7조 (의장)** ①협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③의장의 임기는 호선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 (간사)** ①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가운데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 ②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8.10.21)

②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2008.10.21)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가운데 추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 (후보 등록)**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기정원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2008.10.21)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

①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출한다.(2008.10.21)

1.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근로자위원은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3.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근로자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각 호의 1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여 선출할 수 있다.(2008.10.21)

**제17조 (보궐선거)** ①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전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가운데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 제4장 협의회 운영

**제18조 (협의회 회의)**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마지막달 첫째주에 개최한다.

- ②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공고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9조 (회의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회의록 비치)** ①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다.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라. 기타 토의사항

③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 제5장 협의회회의 임무

**제24조 (협의사항)**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능률성 향상
2.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보건 기타 업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해고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2008.10.21)
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9. 기정원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보상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복지증진
11.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2008.10.21)
12. 기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25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원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6조 (보고사항 등)**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정원 일반 현황

- ②근로자위원회는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회는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의중재)** ①협의회는 노사대표 각1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008.10.21)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만 한다.

##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 (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①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가운데 호선하여 노사 각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2조 (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회는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등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3조 (대장의 비치)**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 제7장 보 칙

**제34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 (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관할 정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6조 (지침외의 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 칙 (2004. 5. 19)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10. 2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이후 최초 선출되는 근로자 위원회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